

7월 1일 이후 세부 행정처분 지침

농림부

1. 필요성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일부터 모든 소·돼지·닭 도축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 시행

- 미시행도축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 필요

• 2002년 8월 5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HACCP 미적용작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인 시·도와 적용대상 도축장의 영업자 모두가 2003년 7월 1일 이후 세부적인 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음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일된 지침 필요

2. 현황

■ 도축장 HACCP 적용 방법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에 의거 도축장은 일일평균도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

- 2000. 7. 1 : 소 100두, 돼지 1000두, 닭 100천

수 이상 도축장

- 2001. 7. 1 : 소 50두, 돼지 500두, 닭 50천수

이상 도축장

- 2002. 7. 1 : 소 30두, 돼지 300두, 닭 30천수

이상 도축장

- 2003. 7. 1 : 소 30두, 돼지 300두, 닭 30천수

미만 도축장

• 도축장의 영업자는 HACCP 7원칙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도축과정에서 운용하고 이를 기록관리

- 정부는 HACCP 운용실태를 검증하고 문제발생시 시정토록 조치

• 법적 근거는 없으나 우리부 지시에 의거 HACCP 운용의 활성화를 위해 검역원으로 하여금 HACCP 적용이 가능한 도축장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HACCP 적용업소 업소로 지정(위생51574-1174호; '00. 6.30)

3. 행정처분 관련규정

• 영업자는 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작성 운용하여야 함(단, 도서지역은

제외)(법 제9조제2항; '01.12.31 규정신설)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규정

※ 단, 동법 부칙규정에 의거 2001년도 1일 평균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도축장,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그리고 3만수 미만인 닭도축장은 2003. 6.30일까지 동 규정 유예

• 시 도지사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 가능(법 제27조; '01.12.31 관련내용 추가규정)

•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법시행규칙 제41조관련 별표11)

4. 2003년 7월 1일 이후 세부 행정처분 지침

■ 세부기준

•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도축장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는 규정대로 실시

• 2003년 7월 1일까지 검역원으로부터 HACCP 적용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도축장은 아래 기준에 의거 조치

① 검역원에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 중인 도

축장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한 업소로는 보되, 동 기준의 운용여부는 실태조사후 행정처분 여부 및 내역 판단

• 실태조사 결과 HACCP 운용 미흡도축장 : “경고” 조치

※ 원칙적으로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 중인 것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검역원과 협력하여 최종 판단

② 검역원에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신청도 하지 않은 도축장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업소로 보되 실태조사후 행정처분 내역 판단

• 동기준 미작성 도축장 : “1개월” 영업정지

• 동기준은 작성하였으나 이를 운용하지 않고 있는 도축장 : 경고

최근 1년이내에 3차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주기를 감안하여야 하며, 4차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6월 또는 영업취소처분 조치

- 행정처분시 위반사항 보완기한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할 것

〈법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11〉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 작성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